2013년 제13호 2013년 11월 1일(금)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전화: (070)7165-0017 전송: (02)3401-6549 http://kaff.or.kr kaff0001@gmail.com

2014년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, 한농연 홈페이지에 게시

-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 대의원총 회 대비를 위하여 반드시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한농연중앙연합회와 한국농업연수원은, 2014년도 농축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 한글 파일을 한농연 홈페 이지(자료마당-한농연자료)에 게시하여, 회원 및 농업인들이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.
- 11월말 집중 개최될 예정인 일선 농축협 예산 대의원총회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, 이사회를 대비하여, 위 자 료는 조합원 및 대의원, 이사, 감사 여러분께서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.
- 동 자료는 한글 파일로 B4 용지 기준으로 편집돼 있습니다. 만약 프린터로 A4 용지에 인쇄하고 싶으시다면, 82% 크기로 축소하여 인쇄하셔야 합니다.
- 아울러 동 자료에는 일선 농축협에 보급돼 있는 지침서에 딸 린 <부표> 자료가 없습니다. 일선 농축협에 직접 문의하셔서 동 자료를 확보하시거나, 2013년도 지침서(한글 파일)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.
- 동 자료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분께서는, 회원지원센터 한 민수 실장(070-7165-0017)이나 한국농업연수원 박재영 부장 (063-352-3051, 2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지방선거 농어민 출마자학교 12월 5일~6일, 한국농업연수원서 열려

- 출마 희망자 및 보좌진 교육 희망자 모집중…11월 22일(금)까지 꼭 신청하세요!
- 한농연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은, 2014년 지방선거에서 농어민 출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조직적·실무적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"농어민 출마자학교"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 정입니다.
- 일시 : 2013년 12월 5일(목)~6일(금)
- 장소 : 한국농업연수원(주소 :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 리 625-100 / 전화 : 063-352-3051, 2)
- 교육 대상 : 민선 6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도전하시 려는 분, 출마자를 보좌하시고자 하는 분
- 신청 마감일 : 2013년 11월 22일(금)
- 교육비 : 30만원
- 지원방법 : 지원서(한국농어민신문 및 한농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십시오)를 작성하여 한국농어민신문(서상현 국장)으로 이메일(seosh@agrinet.co.kr) 혹은 팩스(02-3434-9077, 8)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수료자를 위한 혜택 : 선거운동 전략 등 기초강의 자료 제공,

선거 판촉물 제작시 할인 등

- 문의 : 한농연중앙연합회 김광천 실장(070-7165-0003)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부장(02-3434-9000)

"농축산연합회+한국농림축산연대" 통합하여 한국농축산연합회 발족

- 10월 18일 통합총회 개최, 초대 상임대표로 한농연 김준봉 회장 추대…11월 13일 과천경마공원에서 출범식 개최 예정
- 한농연이 참여해 온 농축산연합회(상임대표 김준봉 한농연 회장) 및 한국농림축산연대(상임대표 김성응 농촌지도자연합 회 회장)가 통합하여 "한국농축산연합회"가 10월 18일 통합 총회를 열고 새로이 출범하였음
-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로는 한농연 김준봉 회장이 추대 되었으며, 오는 11월 13일 과천경마공원에서 출범식을 개최 할 예정임
-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업 정책대안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, 협치농정을 강화하는 등 어려운 농업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방침임

2015년 조합장 동시선거, 합병 농축협 '제외' …해당 조합장에 특혜 우려

- 개정 농협법 내 관련 조항 미비로 합병 농축협 조합장에 특 혜 소지 우려가 제기
- 현행 농협법 부칙 제11조 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에는,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됐거나 개시되는 경우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음.
- 그러나 합병조합은 예외로 규정돼 있음. 농협법의 합병에 따른 임원임기특례규정 제75조 2에 따르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설립 당시 조합장 임기는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돼 있음. 다만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시
- 이에 따라 일부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와 어긋나면서 일 각에서는 현재 재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 도 전임 조합장의 잔여 임기로 제한해 지금처럼 새롭게 4년 을 하지 못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합병조합에 대해 특혜를 주 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
- 농업계 및 정치권은 "합병 당시 조합장이 아닌 차기 조합장의 임기를 동시선거일까지 조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"고 강조하고 있음